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83
----------	------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이은주 · 강은미 · 류호정
장혜영 · ~~이진비~~ · 권인숙
용혜인 · 심상정 · 배진교
강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 사유를 충족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한적 허용은 「형법」 상 ‘낙태죄’에 근거한 것인데,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침해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함(2017헌바127).

따라서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신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임신·임신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모자의 보건을 관리하는 법에서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으로 전환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임신·출산등’에 대한 정의를 임신·출산·유산·사산·인공임신중단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 마. 임산부는 임신·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함(안 제4조의2).

사. 중앙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상담(긴급전화, 온라인 상담 포함), 지역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연계체계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아. 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심리지원, 교육 및 홍보,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자. 임신부등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의료비, 장애유형 및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법률지원·학업지원·상담지원·양육지원 등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차. 임신 유지 또는 중단에 관한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임신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카. 의사는 임신부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임신·출산등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표준적인 진료기준, 의료의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로 한다.

제1조 중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을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를 “선천성장장애아”로,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 이”를 “선천성 장애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인공임신중단”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수술을”을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모성과 영유아”를 “임산부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하 “임산부등”이라 한다)과 영유아”로, “모성의”를 “임산부등의”로 한다.

2. “임신·출산등”이란 임신·출산·유산·사산·인공임신중단을 말

한다.

제3조제1항 중 “모성”을 “임산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을 “모든 사람이 생식건강, 성적 권리,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언어, 인종 및 국적,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모성 등의 의무)”를 “(임산부의 권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산부는 임신·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밀보장)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를 “임신전, 임신, 임신중단, 산후(産後) 전 과정에 걸친 건강 관리, 분만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모성”을 “임산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를 “장애아의 조기 발견 및”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이하 “중앙건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등에 관한 상담(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포함한다) 및 교육
2. 제7조의3에 따른 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3. 임신·출산등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임신·출산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생식건강, 성적 권리, 임신·출산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중앙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이하 “지역건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심리지원

2. 임신·출산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4. 그 밖에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지역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산부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등의 사회적·경제적·의료적 욕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검진, 의료비 등의 지원

2.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3.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4.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5. 생활지원, 법률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양육지원 등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범위, 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호를”을 “지원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선천성이상아”를 각각 “선천성장장애아”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

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중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피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을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식건강, 성적권리, 피임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제공·상담 등”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①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산부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이해와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산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단을 요청한 임산부 본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임산부의 연령 및 심신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되, 정보의 이해와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산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력을 요청받은 사람은 임산부 당사자에게 최선

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안전한 임신·출산등 환경의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임신·출산등의 환경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표준적인 진료기준, 의료의 질 관리, 교육과정·재교육·재훈련,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한 임신·출산등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조의3에 따른 지역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경비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③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⑦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모자보건법</u>	<u>임신 · 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 리보장 및 지원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모성(母性)</u> <u>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u> <u>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u> <u>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u> <u>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모든 사람이</u> <u>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 ·</u> <u>출산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u> <u>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u> <u>효과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필요</u> <u>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u> <u>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 <u>모성</u> ”이란 <u>임산부와 가임기</u> <u>(可妊期) 여성을 말한다.</u> 3. ~ 5. (생 략) 6. “ <u>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u> <u>兒)</u> ”란 <u>선천성 기형(奇形) 또</u> <u>는 변형(變形) 이</u> 있거나 염 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임신 · 출산등</u> ”이란 <u>임신 ·</u> <u>출산 · 유산 · 사산 · 인공임신</u> <u>중단을 말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6. -- <u>선천성장애아</u> ----- <u>선천성</u> <u>장애가</u> ----- ----- -----.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 12.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7. “인공임신중단”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행위를-----.

8. -----임산부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하 “임산부등”이라 한다)과 영유아-----

-----임산부등의-----

-----.

9.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임산부등-----

-----.

② -----모

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

든 사람이 생식건강, 성적 권리,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언어, 인종 및 국적,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의 권리 등) ① 임산부는 임신·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비밀보장)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

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신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생략)

②·③ (생략)

<신설>

1. ----- 임신전, 임신, 임신중단, 산후(産後) 전 과정에 걸친 건강 관리, 분만관리

2. (현행과 같음)

3. 임산부등-----

4. (현행과 같음)

5. 장애아의 조기 발견 및-----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건강 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

<신 설>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이하 “중앙건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등에 관한 상담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포함한다) 및 교육

2. 제7조의3에 따른 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3. 임신·출산등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임신·출산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생식건강, 성적 권리, 임신·출산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중앙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이하 “지역건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심리지원
2. 임신·출산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4. 그 밖에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지역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산부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등의 사회적·경제적·의료적 욕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

[illegible]

② · ③ (생 략)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천성장장애아-----

-----.

⑤ -----선천성장장애아-----

-----.

제12조(피임 등의 사업) ① -----
-----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식건강, 성적권리, 피임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제공·상담 등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

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 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①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산부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이해와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산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단을 요청한 임산부 본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신 설>

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임산부의
연령 및 심신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되,
정보의 이해와 의사결정 과정
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산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력을 요청받은 사람
은 임산부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를 제공하는 데 있어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안전한 임신·출산등
환경의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안
전한 임신·출산등의 환경 보
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
중단에 관한 표준적인 진료기
준, 의료의 질 관리, 교육과정
· 재교육·재훈련,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u>그 밖에 안전한 임신·출산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7조의3에 따른 지역건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경비</u> 4. ~ 9. (현행과 같음) <u><삭제></u>
--	--